

#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2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11월 25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교통과장)

#### 가. 제안이유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역할을 대행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안전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 직제 신설(안 제3조제1항) 및 안전관리 위원회 위원 구성에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 추가(안 제3조제1항1호)
-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설(안 제7조제2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구성원을 직제 신설,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부군수가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 상정 의안 사전 검토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평창군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 있어  
    위원장은 부군수에서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  
    부위원장은 새로 신설하여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실질적 경력 있는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 의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

제5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7조제2항에 “부군수가 되고”를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을은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u>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1. <u>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u></p> <p>2. · 9.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가 되며----- -----.</p> <p>1. <u>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u></p> <p>2. · 9.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u>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부위원장이</u> ----- -----.</p>
<p>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생 략)</p> <p>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u>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u></p> <p>③ ~ ④ (생 략)</p>	<p>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안전</u> <u>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u> <u>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u> <u>장이 되며-----</u>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